

가족학에서 조망한 노인의 연령기준 A Family Welfare Perspective on the Current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손 화 희*

승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과

Hwa-Hee Sohn

Soongeui Women's College

I. 가족생활주기와 노인

일반적인 가족생활주기는 결혼으로 시작해서 자녀출산으로 확대되고, 자녀의 결혼이나 분가로 축소되며, 그리고 부부의 사망으로 끝이 난다. 최근 사회변화로 인해 가족생활주기도 변하고 있는데, 우선 과거에 비해 초혼의 연령부터 늦어지면서 가족형성기의 시작도 늦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초혼의 연령은 1995년 남성 28.4세, 여성 25.3세였지만, 2015년에는 남성 32.6세, 여성 30.0세로 4년 이상 늦어졌다(통계청, 2016a). 자녀를 출가시키는 부모도 마찬가지이다. 자녀의 혼인이 시작되는 기혼 여성의 연령은 1979년 이전에는 평균 54.9세였지만, 2000년대에는 59.5세로 늘어났으며, 또 자녀의 혼인이 완료되는 기혼 여성의 연령

도 그 기간 59.5세에서 63.9세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면서 자녀가 독립한 시기로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곧 모든 자녀를 출가시킨 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노인부부가 함께 보내는 기간은 1979년 이전에는 16.67년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22.02년으로 점점 길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김승권, 2012).

생활주기의 변화는 퇴직연령하고도 관계가 깊다. 법적인 퇴직연령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시기보다 더 일찍 퇴직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녀 출가 이후의 중·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의 문제가 중대하게 부각되고 있다.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등 주요한 발달과업에서 벗어나

* 교신저자, 승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과 손화희 교수 (e-mail: shh2003@sewc.ac.kr)

짧지 않은 여생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노년기 가족의 관계 개선 및 자기부양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자기부양이 가능할 정도로 자신의 노후를 위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았다는 사람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중고령자들의 경우도 비슷한 양태를 보였는데, 노후 준비가 양호한 수준의 비율은 14.7%에 불과한 반면, 사회적 관계가 취약하거나 준비가 부족한 비율은 40%에 이르며 또 거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고위험 수준의 비율도 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2013).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에서도 노후의 준비가 안정되지 못함을 엿볼 수 있다. 통계청(2014) 자료에 따르면, 중고령자들 중에서 본인 및 배우자 부담 비율이 55.2%에 불과했으며, 그 중 절반 정도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조기퇴직 추세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결과적으로 자기부양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현재의 노인세대들은 부모 부양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 자녀세대에 대한 서운함이나 이들과의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문제와 아울러 심리적인 문제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정옥분 등, 2016).

노인인구의 가파른 상승은 과학기술, 특히 의학의 발달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충분한 영양 공급 등으로 평균수명이 높아진 것이 결정적 이유이다. 이와 함

께 노인을 규정하는 인식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몇 십 년 전만해도 60세 환갑을 맞이하는 나이가 되면 노인으로 여겼다면, 최근에는 그 연령이 높아져 70세 이후를 노인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사회에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며, 법이나 제도, 보편타당한 사회적 인식하고의 괴리를 축소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은 현재의 65세가 아닌 다른 연령으로 노인을 규정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II. 노인의 연령기준 조정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노인의 연령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자. 첫째, 생물학적 수명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신체적 기능상태가 좋아지면서 평균수명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의학의 발달과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인하여 수 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최소 10-15년 이상 더 오래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상당수의 고령자들이 정신 및 신체적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왕성한 활동성을 보이고 있다. 곧 현재의 65세는 과거의 50대보다 더 젊고 강건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둘째, 가족 내에서 노인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만혼 현상과 출산을 저하로 가족형성기가 늦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 자녀양육기도 더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50대의 연령에서 조부모 역할이 시작되었던 것에 비해 현대 사회에서는 만혼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60대에도 손자녀 수가 적거나 심지어 없는 이들이 적지 않다. 또 과거 대가족 구조에서 보편화되었던 일정한 역할(예, 손자녀 돌봄)도 핵가족이 일반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비록 그러한 역할이 주어진다 해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즈음 고령자들은 상당수가 정신 및 신체적으로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역할도 없이 노인으로 규정하는 기간만 점점 길어져가고 있는 것을 당혹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제로 60대에 접어든 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70세인 분들조차도 스스로를 노인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 생애주기에서 가장 큰 축하의 자리였던 회갑연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정도이며, 최근에는 70세의 고회연도 가족 중심의 행사로 축소되고 있다.

셋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의 생물학적 설명과 관련된다.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지만, 실제로 퇴직하는 연령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모순적인 현상이 드러나 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60세 정도까지는 정년이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그 연령 이전에 그만둔 사례가 적지 않다. 통계청(2016b)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55-79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1%이지만,

그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일을 그만둘 당시의 평균연령은 49.1세였다. 퇴직 이후 불안한 노후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만, 55%만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 곧 퇴직과 함께 노인으로 분류되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왕성한 신체적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불합리하다. 적어도 노인의 연령기준부터라도 상향조정되어야 근로 장면에서 50대나 60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40대나 50대의 조기퇴직 현상이 감소해질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필요하다. 평균수명이 높아진 것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경향,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인식의 변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50-60대 이후에 직장 경력에 재도전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가 격려해 주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사회의 일원으로 공헌하고 있고,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생애 의미를 부여해줌으로써 인간 삶의 궁극적 가치인 ‘행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개인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충분한 사회적 활동 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며,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들도 있다. 법적 편의성에 의해 마련된 ‘노인 연령’에 대한 규정이 보편적 법집행의 정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사회의 역동적 변화와 개인의 행복을 위해 그 연령기준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일정한 수준(예, 70

세)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족과 개인에 더 합리적이고 당위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승권 (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옥분 · 김동배 · 정순화 · 손화희 (2016). **노인 복지론**. 서울: 학지사.
- 통계청 (2014). **2014 고령자통계**.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6a). **2015년 혼인 이혼통계**. (통계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2016. 04. 07.)

- 통계청 (2016b). **201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고용통계과 보도자료, 2016. 07. 21.)
- 한경혜 (2013). **베이비부머의 삶의 실태와 노후준비 현황**.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동 주최 제5차 인구 · 고령화 포럼 (2013년 11월 27일, 서울 세종호텔).

원고접수일: 2016. 09. 13.
수정원고접수일: 2016. 09. 20.
원고게재승인일: 2016. 10. 15.